

『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서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정지웅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
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』의 제안설명을 드
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
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
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』에 대해
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,

2022. 1.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
에 대한 제정·개정·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(이하 주민조
례청구)을 「지방자치법」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인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이 2022년 1월 제정·시행되었습니다. 이와 같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의 업무처리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지방의회로 바뀌었습니다.

이에 따라 구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동 조례는 그 이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.

□ 폐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
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수 주민 수 기준 조례」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, 본 의원의 폐지 조례안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